

효과적인 협상전략 수립 절실한 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3)가 개최되었다. 회의 일자를 하루 연장한 이번 총회는 2012년 이후(post-2012)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 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호주가 교토의정서를 전격적으로 비준함으로써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참여여부에 관심이 높았으며 더욱이 2012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회의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의제는 post-2012 협상틀을 규정한 발리로드맵, 부속서 I 국가의 감축의무부담 설정작업(AWG),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제2차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

발리로드맵(Bali Action Plan)은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을 규정한 합의로서 이번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의제이다. 부속서 I 국가의 post-2012 의무부담 설정 작업반(AWG)과 분리된 별도의 협상틀로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09년말의 당사국총회(COP-15)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선진국은 보고·측정·검증가능한 방식으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commitments)이나 감축행동(actions)을 취해야 하며 개도국 역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맥락에서 보고·측정·검증가능한 방식으로 감축행동을 취해야 한다. 산림전용 방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부문별 감축 목표 설정방식(sectoral approach)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기로 되어 있다. 개도국(특히 최빈국, 소도서국가, 아프리카 등)에서의 적응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취약성 평가나 재정수요 평가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나 위험감소 전략을 수립하며 개도국의 재앙을 감축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완화 및 적응 기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의 이전·확산·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또 지속가능한 신규 재원을 확보하고 개도국의 완화 및 적응 활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발리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고 올해에는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글 ·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이후의 부속서 I 국가의 의무부담 설정을 위한 특별작업반(AWG) 역시 2009년까지 작업을 완료하는 작업일정과 작업내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의 제4차 평가보고서 결과를 존중하여 최소농도인 450ppm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10~15년에 정점에 달해야 하며 2050년에는 배출량이 200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부속서 I 국가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시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2008년에는 제5차 및 제6차 회의를 추진하고 5차 전반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수단, 후반회의에서는 온실가스 추정 방법론 등의 방법론을 논의하며 6차 전반 회의에서는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후반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비용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에는 부속서 I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규모와 국가별 감축규모, 공약기간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말의 당사국총회(COP-14)에서 추진될 교토의정서의 제2차 검토 내용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교토의정서 검토목적은 의정서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며 검토를 통해서 당사국에 새로운 의무부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적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청정개발제도(CDM)에만 적용되고 있는 부과금 징수를 공동이행(JI)이나 배출권 거래제도(ETS)에도 적용하는 방안, 청정개발제도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협상은 크게 기후변화협약(UNFCCC)하의 발리로드맵과 교토의

정서하의 선진국 의무부담 설정작업(AWG)으로 분류되며 2009년까지의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무부담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협상 의제에 대해서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협상에 의해 결론이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 역시 2009년까지의 협상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협상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은 이미 큰 흐름이 되었으며 이번 발리로드맵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향후 2년 동안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축 전략이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Bali Action Plan

